

# 2024년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자료

2024. 3. 19. (화)



# 국립대학법인 **인천대학교**

캠퍼스기획안전과

# 2024년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자료

## □ 보고안건

| NO |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페이지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1  | 2023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요청사항 경과보고 | 1   |
| 2  | 2023년 안전시설물 개선 공사 현황              | 3   |
| 3  | 2024년도 산업안전보건관리 종합계획              | 6   |

## □ 심의안건

| NO | 내 <del>용</del>               | 페이지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1  | 인천대학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재구성(안) | 7   |

## 보고안건 1

## 23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요청사항 처리 경과보고

## 1. 기계실 내 휴게실 등 소음 측정 요청

- O 요청배경 : 공동실험실습관 지하1층 기계실 내 휴게실 내 소음 노출
- O 검토결과
  - 측정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측정 실시
  - 공동실험실습관(9호관) 휴게실 포함 6개소 측정
  - 측정 결과 모든 개소 휴게실 소음 기준인 50dB 이하
  - 하반기 소음 측정을 통해 측정치 추이 확인 후 조치

| No | 측정위치         | 공간명             | 측정시간 | 측정치(dB) | 권고기준(dB) | 평가결과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9호관<br>기계실   | 기계실<br>휴게시설     | 24시간 | 22.6    | 50       | ·<br>양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  | 대학본부<br>종합병실 | 경비 · 운전<br>휴게시설 | 8시간  | 7.7     | 50       | ·호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  | 8호관<br>110호  | 미화<br>휴게시설      | 8시간  | 22.5    | 50       | 향호        | 휴게실 내 복합식 수신기 등<br>설치    |
| 4  | 8호관<br>115호  | 미화<br>휴게시설      | 8시간  | 46.8    | 50       | ·i어<br>향0 | 통신렉 소음 및<br>측정당시 공사소음 발생 |
| 5  | 8호관<br>118호  | 미화<br>휴게시설      | 8시간  | 40.2    | 50       | 향         | 윗층 화장실 소음 발생             |
| 6  | 29호관<br>103호 | 미화<br>휴게시설      | 8시간  | 33      | 50       | 향호        | 휴게실 내<br>유수검지장치실 설치      |

## 2. 독감예방접종 비용 지원 요청

- O 요청배경 : 현업근로자 평균연령의 상승에 따른 전염병 예방
- 검토결과 : 지원 불가(총무과 검토)
  - 건강검진 지원비 한도(20만원) 내 예방접종 시행 가능
  - 개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자율접종이 타당(의무접종 후유증 등 우려)
  - 특정 직렬 종사자의 차별적 혜택 수혜

## 3.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외부 작업 현업근로자 방한용품 지급

○ 요청배경 : 겨울철 외부작업 시 한랭질환 예방

O 검토결과 : 넥워머, 방한귀마개, 방한장갑 등 **방한용품 지급 완료** 

(조경, 기계, 전기, 소방, AV)



## 4. 정보기술대학(7호관) 미화 휴게시설 면적 등 검토

○ 요청배경 : 일부 휴게시설의 경우 이용 근로자가 많아 협소

○ 검토결과 : 요청장소 7호관 휴게시설 면적 현장 확인 결과 사용면적이 28㎡로

산업안전보건법 최소면적 6m<sup>2</sup> 이상으로 법적기준 충족

## 보고안건 2

# '23년 안전시설물 개선 공사 현황

#### □ 『현업근로자 안전 카카오톡방』운영에 따른 안전시설물 개선공사

#### O 11호관 2층 안전난간대 개선 공사

- 제 보 자 : 시설관리팀 김옥분(11호관 미화 근로자)

- 제보일자 : 2023년 11월 9일(목)

- 제보내용 : 11호관 2층 안전난간대가 불안정 추락위험 개선요청

- 점검결과 : 현장확인 결과 안전난간대 흔들림이 심하여 추락재해 예방을 위하여 개선 필요

- 개선결과 : 안전난간대 보수공사를 통한 개선 실시(2023년 12월 20일)



## O 목공실 앞 배수로 그레이팅 설치 공사

- 제 보 자 : 시설관리팀 황국진(조경 근로자)

- 제보일자 : 2023년 12월 12일(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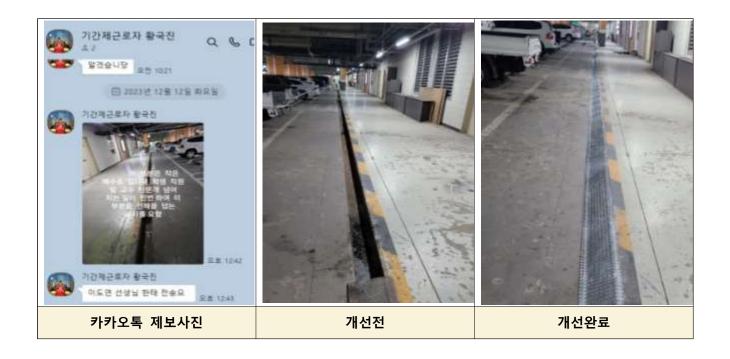
- 제보내용 : 지하주차장 목공실 앞 배수로에 넘어짐 사고가 빈번 개선요청

- 점검결과

· 상시적으로 목공실에서 조경도구 등을 운반하는 이동구간 ⇒ 개선시 사고예방에 효과적

· 배수로 단차로 인한 넘어짐 사고 발생 위험(요소내재근로자 의견 수렴 완료)

- 개선결과 : 그레이팅 설치공사 통한 개선 실시(2024년 1월 22일)



## □ 『23년 위험성평가 등 안전점검』을 통한 안전시설물 개선공사

- O 위험성평가에 따른 개선공사
- 공동실험실습관(9호관) 지하 기계실 중계펌프장 안전난간대 등 위험요인 12건 개선 공사
- 공사완료 : 2023년 12월 5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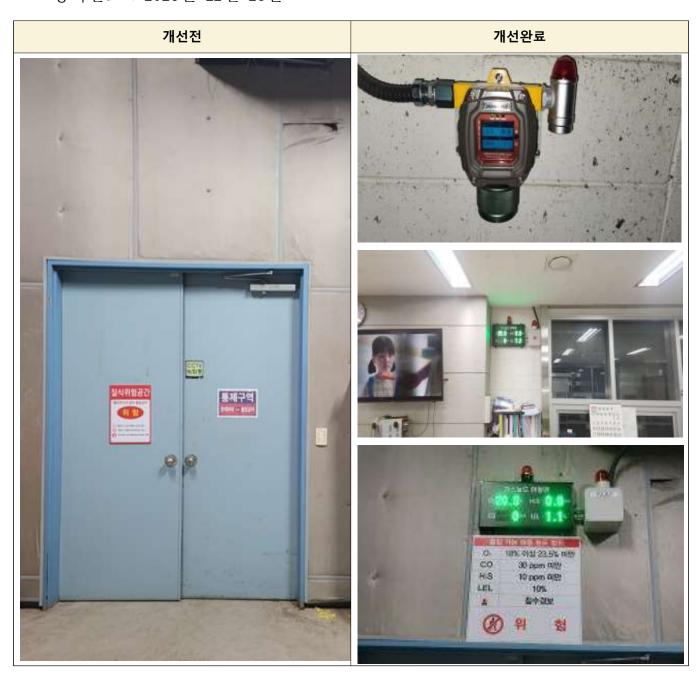
## O 밀폐장소 가스농도측정기 설치공사

-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복합 가스농도측정기 설치공사

- 설치장소 : 공동실험실습관(9호관) 지하 기계실 중계펌프장

- 측정종류 : 산소, 황화수소, 이산화탄소, 메탄

- 공사완료 : 2023년 12월 23일



## 보고안건 3

## 2024년도 산업안전보건관리 종합계획

## 1. 목적

- 가. 고등교육기관 현업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('20년 1월)에 따른 법 이행
- 나. 인천대학교 현업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

#### 2. 주요내용

| 가. | 추진개요               | -1p |
|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나. | 23년도 안전보건 추진 실적    | -2p |
| 다. | 산업안전보건현황           | -3p |
| 라. | 24년도 안전보건 추진계획     | -4p |
| 마. | 24년도 안전보건 세부계획     | -6p |
| 바. | 24년도 업무흐름도 및 사업예산] | 19p |
| 사. | 행정사항               | 20p |

## 3. 향후계획

- 가. 현업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(매월)
- 나.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(3월, 5월, 8월, 11월)
- 다. 현업근로자 특수건강검진(3월~5월)
- 라. 현업근로자 산업보건의 건강상담(6월, 12월)
- 마. 현업근로자 직무스트레스 검사(10월)

## # 별첨 : 2024년도 산업안전보건관리 종합계획

심의안건1

####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재구성(안)

## 1.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재구성(안)

#### 가. 추진배경

- (1) 민원접수(신원 비공개 요청) : 근로자위원 구성 및 참여비율에 대한 이의제기
- (2) 산업안전보건법, 인천대학교 안전보건관리규정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,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, 현재 기계 · 미화 · 전기 · 소방 · AV · 운전 · 보안업무 수행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없음
  - ⇒ 따라서 현재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의 대표성이 불분명하여
   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를 재선출하여야 함

#### 나. 검토결과

- (1) 법적 구성요건(근로자위원 구성)
  -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(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)
  - 인천대학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(위원회의 구성)
  - ①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
    - 1. 근로자대표
    - 2.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근로자

## (2) 매뉴얼(고용노동부)

-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거나 복수노조가 존재하고 각 노조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출해야 함
- 대학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현업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근로자대표 선정 시 **근로자 범위는 현업업무종사자만이 해당**
-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지명하도록 규정

## 다. 대안 : 근로자대표 선출 및 근로자위원 재구성(법적요건 충족)

(1) 근로자대표 선거의 원칙은 모든 현업근로자가 참여한 투표를 통하여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여야 하나 소속부서,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관리가 어려울 경우 사용자가 과정 진행 협조(총괄: 캠퍼스기획안전과)

#### (2) 근로자위원 구성(안)

| 분야    | 미화  | 조경  | 기계  | 전기  | 소방  | AV   | 운전  | 보안   | 합계  |
|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|
| 인원(명) | 67  | 30  | 10  | 4   | 4   | 1    | 6   | 1    | 122 |
| 비율(명) | 3.3 | 1.5 | 0.5 | 0.2 | 0.2 | 0.05 | 0.3 | 0.05 | 6   |
| 구성(안) | 3명  | 1명  |     | 1명  |     |      | 1명  |      | 6명  |

#### ※ 근로자위원은 사용자위원과 같은 수로 구성(인천대학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): 6명

#### (3)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

- 가결 : 전체 현업근로자 투표를 통한 근로자대표 재선출 및 근로자위원 구성

- 부결 : 현재 구성된 위원회 운영을 유지하되 대안 모색후 안건 재상정

- 보류 : 보류 의견을 검토하여 2/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재심의

#### 라. 향후계획(대안 가결시)

- (1) 근로자대표 선출(선거)
- (2) 근로자위원 구성 및 통보(근로자대표 ⇒ 인천대학교)
  - ※ 노조가 구성되어 있는 분이는 노조의 의견을 반영하고, 비구성 분이는 참여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명
- (3) 신규 구성 근로자위원 참석(2/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)
  - ※ 재구성 전까지는 現 근로자위원 유효